

파주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85
----------	-----

제출년월일 : 1998.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현재 시세조례는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되기 이전에 제정된 것으로 세금의 구성요소가 되는 주요사항이 부분적으로 조례에 미반영되어 있고 지방세법령의 보완전인 기능 정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 조례정비계획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령에 맞추어 정리한 지방세 일반조례 표준안에 의거 시세조례를 전면개정 하고자 함.

☐ 주요골자

1. 지금까지의 징세행정 편의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상대적으로 소홀이 취급되어 오던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는 규정을 신설함(안제6조)
2. 지방세를 신고납부한자가 과세자료의 변동이 있을 때 수정신고하는 규정을 신설함(안제7조)
3. 보통세의 세목, 납세의무자, 세율, 납기와 징수방법등의 규정 명시(안제2장)
 - 주민세(제1절)
납세의무자(안제20조), 과세기준일과 납기(안제21조), 신고납부(안제23조), 수정신고납부(안제24조)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내지 제9조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시세부과징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 2 절 납 세 자 권 리 보 호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시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정신고) ①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37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파주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절 통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시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 법등의 적용)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세목) ①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세
2. 재산세
3. 자동차세
4. 농지세
5. 담배소비세
6. 도축세
7. 종합토지세

③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세
2. 사업소세

- 재산세(제2절)
과세대상(안제25조), 납세의무자(안제26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안제28조)
- 자동차세(제3절)
납세의무자(안제38조), 과세표준과 세율(안제39조), 납기와 징수방법(안제40조)
- 농지세(제4절)
납세의무자(안제43조), 과세기간(안제46조), 과세표준(안제47조), 세율(안제48조), 확정신고와 자진납부(안제52조)
- 담배소비세(제5절)
과세대상(안제54조), 납세의무자(안제55조), 과세표준(안제56조), 세율(안제57조), 제조담배의 반출신고(안제59조), 개·폐업의 신고(안제60조), 신고납부(안제62조)
- 도축세(제6절) : 납세의무자(안제65조)
- 종합토지세(제7절)
과세대상(안제73조), 납세의무자(안제74조), 과세표준(안제75조), 세율(안제76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안제77조), 공람 및 이의신청(안제82조)

4. 목적세의 세목, 납세의무자, 세율, 납기와 징수방법등의 규정 명시(안제3장)

- 도시계획세(제1절)
과세표준(안제90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안제91조), 신고의무(안제94조)
- 사업소세(제2절)
납세의무자(안제96조), 과세표준(안제97조), 납기(안제99조)

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해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즉시 환부해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지방세 관련 5급이상의 공무원 1명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3명을 시장이 임명,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 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사업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6. 시세 성실 납세자

④위원장은 적부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적부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시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시세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시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시세제도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세제분과위원회와 시세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

③제2항의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이상 3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중 1인은 총무국장이 되며 다른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⑦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위원회의 위원중 세무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당연직위원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한 자
5. 기타 지방세 제도 또는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제10조(분과위원회 구성)①각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이상 10인이하로 구성하며 시세심의위원회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시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시세심의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와 파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절 부 과 징 수

제11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등의 송달, 세금의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시 내부위임규정을 정하여 읍·면·동장(군내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조의2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지방세 본세 1건당 3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하며 1건당 금액에는 지방세의 가산세 및 가산금과 국세를 제외한다. 다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고지서 1매당 지방세 본세액을 1건으로 한다.

제13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시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내로 한다.

제14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법 제1조제1항 제9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기한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재 연장할 수 있다.

④시장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납부 또는 납입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통·리·반의 통·리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송달부 교부근거에 의하여 서류 1매당 5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허가 등의 제한) 시장이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 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허가 등의 종목
3. 허가 등을 제한하는 이유
4. 기타 참고사항

제18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에 관한 징수 유예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시세는 그 징수금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 2 장 보 통 세

제 1 절 주 민 세

제20조(납세의무자) ①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파주시내(이하 “시내” 라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내에 영 제130조의2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제21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 까지를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

제22조(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동 : 1,800원

읍·면 : 1,000원

나.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50,000원

2. 법인

구	세	율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 (법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초과 30억원 이하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기타법인	50,000원	

②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2.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3. 농지세할 : 농지세액의 100분의 10

제23조(신고납부) ①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20일(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30일)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는

귀속사업년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만료일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③법인세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법 제1조제1항제6호의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4조(수정신고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내에 이를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할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2 절 재 산 세

제25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시내에 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

제26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⑥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7조(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8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9조(세율)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건축물

(1) 주택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이하	1,000분의 3

1,200만원초과

1,600만원이하	3만6천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

1,600만원초과

2,200만원이하	5만6천원+1,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	--------------------------------

2,2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	11만6천원+2,2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	---------------------------------

3,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35만6천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	---------------------------------

4,000만원초과	85만6천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0
-----------	---------------------------------

(2)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그가액의 1,000분의 50

(3)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읍·면지역은 제외한다) : 그가액의 1,000분의 6

(4) 제1목 내지 제3목 이외의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3

2. 선박

(1) 고급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2) 제1목 이외의 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3

3. 항공기 : 그 가액의 1,000분의 3

②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30조(비과세 신청서의 제출)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정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에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제31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③제1항의 용도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는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되었을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3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선박이 과세선박이 된 때
5. 과세선박이 비과세선박이 된 때

제3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

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 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2. 항공기를 매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항공기가 과세항공기로 된 때
5. 과세항공기가 비과세항공기로 된 때

제37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절 자 동 차 세

제38조(납세의무자) 시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승용자동차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 기 량	씨씨당세액	배 기 량	씨씨당세액
1,000씨씨이하	18원	800씨씨이하	100원
1,500씨씨이하	18원	1,000씨씨이하	120원
2,000씨씨이하	19원	1,500씨씨이하	160원
2,500씨씨이하	19원	2,000씨씨이하	220원
2,500씨씨초과	24원	2,500씨씨이하	250원
		3,000씨씨이하	310원
		3,000씨씨초과	370원

2. 기타 승용자동차

영 업 용	비 영 업 용
20,000 원	100,000 원

3. 승합자동차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고속 버스	100,000 원	-
대형전세버스	70,000 원	-
소형전세버스	50,000 원	-
대형일반버스	42,000 원	115,000 원
소형일반버스	25,000 원	65,000 원

4.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1,000킬로그램이하	6,600 원	28,500 원
2,000킬로그램이하	9,600 원	34,500 원
3,000킬로그램이하	13,500 원	48,000 원
4,000킬로그램이하	18,000 원	63,000 원
5,000킬로그램이하	22,500 원	79,500 원
8,000킬로그램이하	36,000 원	130,500 원
10,000킬로그램이하	45,000 원	157,500 원

5. 특수자동차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 원	157,500 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 원	58,500 원

6.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영 업 용	비 영 업 용
3,300 원	18,000 원

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 이라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0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 분	기 간	납 기
제 1 기분	1. 1 ~ 6. 30	6. 16 ~ 6. 30
제 2 기분	7. 1 ~ 12. 31	12. 16 ~ 12. 31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와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③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④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하는 때에 연세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제41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자동차를 신규등록 하거나 말소 등록한 경우에는 시장은 취득한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하여 각각 징수한다.

②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하여 징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2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금액을 당해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 4 절 농 지 세

제43조(납세의무자) ①시내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하 이 절에서 “농지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자는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③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은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의 납부 의무를 진다.

④같은 세대내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주된 납세의무자가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제44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지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5조(개간·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년월일, 사실상준공년월일, 영농개시일, 피해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로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과세기간) ①농지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농지세를 부과한다.

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지소득에 대하여 농지세를 부과한다.

제47조(과세표준) ①농지세의 과세표준은 농지소득금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2이상의 시에 있는 농지에서 생기는 농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그 합

계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48조(세율) 농지세의 세액은 과세기간중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400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400만원초과 1,000만원이하	12만원+4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6
1,000만원초과 2,500만원이하	108만원+1,0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7
2,500만원초과 5,000만원이하	513만원+2,5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8
5,000만원초과	1,463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0

제49조(농지의 변동신고등) ①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번·면적·작물의 종류와 변동사유 발생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지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
2. 농지의 경작자가 변동된 때
3. 농지가 농지이외의 토지로 되거나, 농지이외의 토지가 농지로 된 때
4.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때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 사실을 즉시 농지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중간예납) ①영 제162조의 규정에서 “연2회 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기분 :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 제2기분 : 8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납기내에 발생한 농지소득을 근거로 시장이 산출하여 통지한 농지세액을 다음 기간에 중간예납하여야 한다.

1. 제1기분 :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기분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51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지세는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하여 영 제166조의 정하는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52조(확정신고와 자진납부) ①농지세의 납부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지소득금액을 확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3조제1항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농지의 납부의무자는 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항의 기간내에 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14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2. 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3. 법 제21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세액

제53조(농지조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농지수입금액, 농지소득금액 기타 농지세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와 읍·면에 농지조사위원회를 둔다.

②농지조사위원회는 시 또는 읍·면내의 농지소유자·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농지조사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농지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5 절 담 배 소 비 세

제54조(과세대상) 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제조담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흡연용의 제조담배

가. 제1종 쥘런

나. 제2종 파이프담배

다. 제3종 엽쥘런

라. 제4종 각런

2. 씹는 제조담배

3. 냄새맡는 제조담배

제55조(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제조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제조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조한자 또는 반입한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6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57조(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흡연용의 제조담배

가. 제1종 쉼련 20개비당 460원. 다만,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당)

이하인 쉼련은 20개당 40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910원

다. 제3종 엽쉼련 50그램당 2,600원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910원

2. 씹는 제조담배 50그램당 1,040원

3. 냄새맡는 제조담배 50그램당 650원

②제조담배로서 판매가격이 다음 각호의 정하는 금액 이하의 제조담배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로 한다.

1. 쉼련 : 20개비당 100원

2. 각련 : 50그램당 100원

제58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기타 참고사항

제59조(제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세대상이되는 반출·미납세반출 및 비과세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0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조장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성명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제조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제조담배의 품종
4. 1일 평균 생산능력 또는 평균수입량
5. 제조담배 수입판매 영업개시일자
6. 제조담배 보관창고의 주소 및 위치도면
7. 주민등록표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8.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
9. 기타 참고사항

제61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62조(신고납부등)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시내에 주사무소가 있는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제조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63조(가산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 다만, 신고납부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제조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납부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제조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4.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제조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64조(납세담보) ①시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 제18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시장은 제조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 6 절 도 축 세

제65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시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66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시장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②도축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소 : 도살하는 소가격의 1,000분의 10
2. 돼지 : 도살하는 돼지가격의 1,000분의 10

제67조(징수방법) 도축세는 법 제1조제1항제8호의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 할 수 있다.

제68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소·돼지를 도축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장 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소·돼지를 도살하는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②소·돼지를 도축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9조(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

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고 징수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납입하여야 한다.

제70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1조(가산세) 시장은 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72조(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축장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1. 도살년월일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3. 도축의 종류별 두수와 과세표준액 및 해당 도축세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년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 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도축장 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7 절 종 합 토 지 세

제73조(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시내의 모든 토지로 한다.

제74조(납세의무자) ①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5에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의 개인등의 명의로 등제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토지로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신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제75(과세표준) 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영 제194조의16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며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영 제194조의14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격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
2. 감면조례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격
3. 영 제194조의15제1항에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
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영 제194조의15제2항에서 정하는 임야의 가액
5.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영 제194조의15제3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가액
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영 제194조의15제4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가액

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

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영 제194조의16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

제76조(세율) ①제7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천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4만원+2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5천만원이하 1억원초과	13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억원초과 3억원이하	38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
3억원초과 5억원이하	178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378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1,128만원+10억원 초과금액 1,000분의 20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5,128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50억원초과	1억1,128만원+5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②제75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1억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5억원이하

3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19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44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6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1,640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8

5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3,240만원+5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100억원초과

300억원이하

8,240만원+1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2

3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

3억2,240만원+3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500억원초과

6억2,240만원+5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0

③제75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 (이하 “분리과세대상토지”이라 한다)의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

2.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3. 제1호 내지 제2호 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77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당해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8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79조(부과·징수 등) ①종합토지세는 제76조제1항및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합산세액을 영 제194조의1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을 시장이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②분리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직접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③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가액의 합산·세액산정 기타 부과절차와 징수방법등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104조의16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0조(세액조정) 시장은 과세대상토지의 누락으로 인한 수시부과 사유의 발생, 위법 또는 착오로 인한 부과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종합토지세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17의 규정에 따라 세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81조(신고의무) ①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 또는 과세대상토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중중토지로서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중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중중토지임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및 방법은 시행규칙 제104조의18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⑥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수탁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및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과세토지가 과세토지로 되거나 과세토지가 비과세토지로 된 때

2.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3.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⑧법 제234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공람 및 이의신청) ①시장은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를 조사하여 매년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3조(과세대장 비치) 시장은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목 적 세

제 1 절 도시계획세

제84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이하 이조에서 “시”라한다)에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2. 건축물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제85조(부과지역의 고시)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6조(비과세 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에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87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

세대장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8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 신고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9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제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2. 재개발사업지구
3. 개발예정구획조성사업지구

제90조(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가액(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 또는 건축물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91조(과세기준일과 납기)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는 다음과 같다.

과 세 대 상	과 세 기 준 일	납 기
건 축 물	매년 5월 1일	매년 6월 16일 ~ 6월 30일
토 지	매년 6월 1일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제92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2로 한다.

제93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4조(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 ②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4조의21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5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종합토지세과세대장등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 절 사 업 소 세

제96조(납세의무자) 시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자는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재산할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제97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산할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2. 종업원할 :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제98조(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산할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2. 종업원할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②영 제211조의2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99조(납기) ①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납기로하여 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00조(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101조(비과세 신청서의 제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 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하고,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 (사업소를 신설 하는 경우에는 신설 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에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및 감면사유
6. 기타 필요한 사항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